

고 시

충청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 - 2 호

우편법시행령 제4조 제1항(우편업무의 위탁) 및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94조(집배구의 신설·변경)의 규정에 의거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.

2017. 4. 3.

충 청 지 방 우 정 청 장

1. 특수지 계약 집배구 지역변경 내역

특수지 계약 지역명	
현 행	변 경
충청남도 논산시 별곡면 도산리, 만목리 전지역	충청남도 논산시 별곡면 도산리, 만목리, <u>수락리</u> , <u>어곡리</u> 전지역

2. 변경사유 : 특수지 계약 지역을 변경하여 효율적 특수지 운영

3. 시행일자 : 2017. 4 . 10 .자